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47 발의연월일: 2024. 8. 30

발 의 자:정동만·송언석·엄태영

최수진 • 정연욱 • 김형동

김선교 • 박형수 • 김태호

김종양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(5종)를 법과 시행령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중이나,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이 필요함

주요내용

- 가. 전입신고·주소 변경 사실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운영· 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(안 제10조의4)
- 나.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(안 제16조의2)

법률 제 호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4(주민등록 관련 사실의 통보) ①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관련 신고 및 변경, 발급 등에 관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서비스(이하 이 조에서 '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'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의 종류, 신청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0조의4(주민등록 관련 사실의
	통보) ①시장・군수 또는 구청
	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
	주민등록 관련 신고 및 변경, 발
	급 등에 관한 사실을 신청인에
	게 통보하는 서비스(이하 이 조
	에서 '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
	스'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
	통보서비스의 종류, 신청 대상
	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
	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16조의2(전입신고 사실의 통보)	<u><삭 제></u>
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	
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	
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	
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	
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	
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	
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	
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	
실을 그 세대주, 소유자 또는 임	
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.	
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	

 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

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